



| | | | | |
|---|-------|--|--|---|
|  | | 보 도 자 료 | |  |
| | | 배포일시 | 2020. 2. 6(목) 총 2매(본문2) | |
| 담당 부서 | 건설산업과 | 담 당 자 | • 과장 박정수, 사무관 유연형, 주무관 김송이 • ☎ (044) 201-3544, 3545 | |
| 보 도 일 시 | | 2020년 2월 7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7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 | | |

타워크레인·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안전교육 3년 주기 의무화

- 타워크레인, 지게차,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*하고, 교육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.
 - * 가나다순 :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(교육과정 : 일반건설기계·하역기계), 안전보건진흥원(일반건설기계·하역기계),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(일반건설기계·하역기계), 한국안전보건협회(일반건설기계·하역기계), 한국크레인협회(하역기계)
 -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·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,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·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하였다.
-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·붕괴 등 잇 다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,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되었으며,
 -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,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 건설기계,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, 건설기계 면허(총 19종)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.

○ 다만,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일이 '09.12.31일 이전인 경우는 2020년까지, 면허발급일이 '10.1.1부터 '14.12.31일인 경우는 2021년까지, 면허발급일이 '15.1.1일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□ 이번에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오는 2월 12일경부터 수강신청 (일부 기관 제외)을 받아 교육을 시행하며, 지정교육기관별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은 해당기관의 누리집(홈페이지)에서 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가능하다.

* 가나다 순

| 구분 | 시행교육 | 홈페이지 | 전화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|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| edu.kungi.kr | 042-523-8050 |
| 안전보건진흥원 |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| www.shai.or.kr | 02-804-7900 |
|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교육원 |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| www.kspeaed.com | 02-741-8183 02-420-0106~7 |
| 한국안전보건협회 |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| www.csha.or.kr | 02-3666-9777 |
| 한국크레인협회 | 하역기계 | www.cranes.or.kr | 02-522-1507 02-6959-1518·1528·1538 |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신청 현황 등 교육수요를 보아가며, 지정교육기관의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정수 과장은 “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,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되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,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,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유연형 사무관(☎044-201-3544), 김송이 주무관
(☎044-201-354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